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 외 10명(찬성자:33명)

나. 의안번호 : 제 2932 호

다. 발의일자 : 2025. 08. 11

라. 회부일자 : 2025. 08. 14

2. 제안이유

-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소방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시민안전기본교육,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다. 시장에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3조, 제4조)
- 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시민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토록 하면서 교육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바.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함. (안 제7조)
- 사.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함. (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8. 20.~8. 24.)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안전교육의 기틀을 구축하면서,
- 동시에 본 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7.13 제정)」(이하 “시민안전과수꾼조례”라 한다)를 폐지하고 이를 시민안전기본교육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과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표 1]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 요 내 용
안 제1조 (목적)	·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2조 (정의)	· “소방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안전취약계층”, “시민안전기본교육”의 용어 정의 1. “소방안전 교육”이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2. “응급처치 교육”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4. “시민안전기본교육”이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
안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실행)	· 시장에게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장비·인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5조 (교육 일반운영)	· 시장에게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함. 1.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에게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제1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육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 시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 시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함.
제7조 (교육 홍보)	· 시장에게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함.
부 칙	·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하면서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 수훈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 교육 현황

-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에 근거하여 매년 안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교육에 관한 목표,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재원 등을 포함한 ‘소방안전 교육 운영계획2)’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내 25개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광나루)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추진중임.

- 먼저,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 교육은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출장교육, 체험행사,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 세부 교육은 소소완(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응급처치, 찾아가는 취약계층, 미래소방관(직업체험 교육),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체험시설 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등으로 최근 3년간 총 126만 4,650명이 이수하였음.([표 2] 참조)

[표 2]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 이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소소완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응급처치 (CPR)	찾아가는 취약계층	미래 소방관	공동주택 화재안전 리더	체험시설 교육	다중이용 업소 관 계인 법 정교육(집 합교육)	기타
계	1,264,650	631,739	269,255	86,313	79,481	12,818	70,100	1,254	113,690
2025.7.	307,530	160,423	50,135	20,460	25,084	2,094	29,570	211	19,553
2024	516,188	215,754	95,768	27,058	35,980	10,015	37,097	379	94,137
2023	440,932	255,562	123,352	38,795	18,417	709	3,433	664	-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2) 「2025년 소방안전교육 운영계획」 안전지원과-668, 2025.1.10.

- 다음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보라매안전체험관(2010.5.25. 개관)’은 21개의 체험시설³⁾, ‘광나루안전체험관(2003.3.6.개관)’은 20개의 체험시설⁴⁾을 갖추고 재난체험, 전문(소방실습 및 응급처치 실습 등)체험, 어린이체험, 소방관진로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은 17만 3,931명으로 집계됨.([표 3] 참조)

[표 3]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3	2024	2025.7.	계
보라매	61,325	72,272	40,334	173,931
광나루	46,923	42,129	28,320	117,372
합계	108,248	114,401	68,664	291313

- 한편, 소방본부는 소방안전 교육과는 별개로 2015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10만 ‘시민안전파수꾼⁵⁾’ 양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2만 8,530명이 배출되어 정책 추진 목표를 달성하였음.([표 4] 참조)

3) **보라매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종류** : 화재체험(대피, 완강기, 진압), 교통체험(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통학차, 버스, 지하철), 지진체험, 태풍체험, 4D 영상관, 응급처치 실습, 소방시설 실습, 어린이 체험(안전체험장, 생활안전), 소방관 직업체험, 다목적 홀, 추모공간, 소방역사박물관, 소방문화재 전시공간, 오리엔테이션홀

4) **광나루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종류** : 선박안전체험, 지진체험, 멀티풍수해, 화재대피체험, 건물탈출체험(실내, 실외), 소화기 체험, 지하철화재체험, 승강기체험, 생활안전체험, 다목적교통안전, 4D 라이더 영상관, 3D 영상관, 진로체험교실, 응급처치체험, 새싹어린이안전(재난안전체험), 야외 소화기체험, 출동어린이소방대, 전시소방차량, 방화셔터

5) 2015년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서울특별시상 방침 제371호, 2014.12.24.)을 통해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7.13.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임.

[표 4]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현황(2015년~2025.7월)

(단위 : 명,%)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양성목표		125,800	10,000	30,000	30,000	30,000	10,000	6,000	1,800	2,000	2,000	2,000	2,000
양성인원		128,530	10,380	30,189	30,149	30,145	11,534	3,515	2,628	2,977	3,851	2,163	999
단체	인원	114,456	10,255	28,279	24,551	24,345	11,207	3,515	2,628	2,977	3,537	2,163	999
	비율	89%	99%	94%	81%	81%	97%	100%	100%	100%	92%	100%	100%
개인	인원	14,074	125	1,910	5,598	5,800	327	0	0	0	314	0	0
	비율	11%	1%	6%	19%	19%	3%	0%	0%	0%	8%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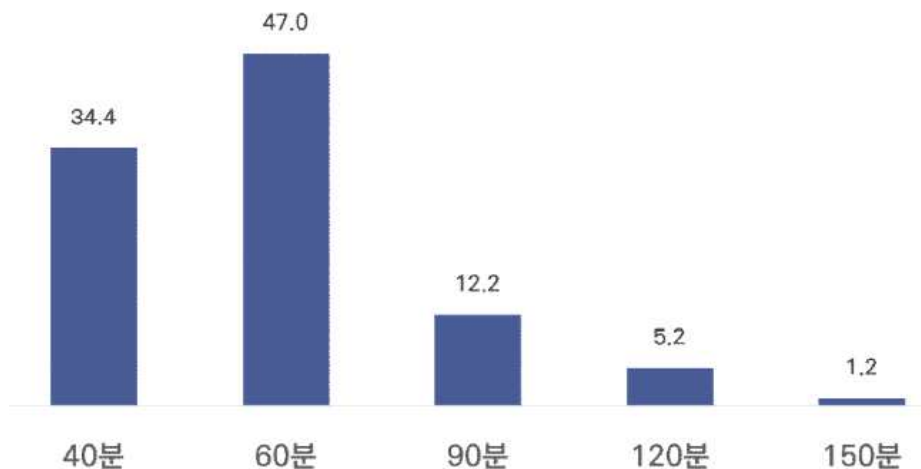
- 다만, [표 4]에서 교육 참여자의 비율을 보면 단체(학교·기업 등) 참여율이 89%인 반면, 개인 참여율은 11%에 그쳐 개인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시민안전파수꾼 초기대응교육([표 5] 참조)이 기본교육 8시간, 심화교육 4시간 등 장시간 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개인이 시간적 제약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임.

[표 5] 초기대응교육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교육과목	세부과목	교육시간
기본교육	위기상황판단	안전의식 함양	2시간
		위기상황판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3시간
		그 밖의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재난대응기본원칙	3시간
		초기대처요령	
심화교육	테마별 재난대응	대상별 재난대응요령	4시간
		장소별 재난대응요령	

- 실제로 2023년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용역」(2023.3.~2023.6.)⁶⁾을 통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회당 적절한 교육시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47%)가 60분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40분’(34.4%), ‘90분’(12.2%)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단시간·집중형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그림 1]참조)

(단위 : %, 전체 사례수 : 500명)



[그림 1] 1회당 적절한 교육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

- 이는 기존의 시민안전과수꾼 교육과 같이 장시간으로 운영되는 방식보다는 짧고 집중적인 교육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6)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가. 연구범위

서울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교육체계 현황·진단

서울시 표준 기본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

나. 연구기간 : 2023.3.~2023.6.(3개월)

다.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 조사내용 : 시민의 안전위험요인, 교육분야별(18개 분야) 필요도, 교육과정 구성 선호도(1회당 적절한 교육시간, 적절한 교육 과정의 구성)

■ 제정안 취지에 대한 의견

- 소방본부는 매년 ‘소방안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 및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교육(소소완(소화기·소화전·완강기), 응급처치, 찾아가는 취약계층, 미래소방관,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체험시설 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등)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17조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⁹⁾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특정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며,

7)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생략)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하생략)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에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응급처치 교육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¹⁰⁾, 「학교보건법」 제9조의2¹¹⁾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포함한 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준별 단계로 세분화된 ‘시민안전 기본교육’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시민안전 파수꾼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표 6] 참조)

[표 6]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개편안(시민안전파수꾼 교육 → 시민안전기본교육)

구 분	기 존	변 경
정책 명칭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시민안전기본교육
정책 목적	안전리더 양성 중점	고품질 표준안전교육 이수
교육 과정	단일 과정	3개 과정(수준별 단계 세분화)
교육 강사	파수꾼 전문강사	시민 전문강사 + 소방서 안전교육 담당자
교육 방식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 운영	

-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이를 통해 기존의 실무 중심 교육을 법적 제도로 뒷받침하여 교육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초기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교육”이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응급처치 교육”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안전기본교육”이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 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을 말한다.

- 안 제2조(정의)는 “소방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안전취약계층”, “시민안전기본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소방안전 교육”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안 제2호는 “응급처치 교육”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각각의 교육 내

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구분을 통해 차별성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하다 사료됨.

- 안 제2조제3호는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¹²⁾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법적 정의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향후 교육 대상의 선정 등에 실무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함.
- 그리고 안 제2조제4호는 ‘시민안전기본교육’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 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생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생략)

- 이는 현행 시민안전과수꾼 제도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에게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교육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하겠음.

다.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장비·인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는 시장에게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교육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시행 실적과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먼저,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소방본부는 이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매년 ‘소방안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대동소이하여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교육 일반운영(안 제5조)

제5조(교육 일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다.

②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육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안 제5조(교육 일반운영)**는 시장에게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시 고려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시행을 규정하는 한편, 교육 방법 및 대상,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 말하는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¹³⁾은 대상별 생활환경과 신체·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접근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¹⁴⁾’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13) 교육대상자 특성(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1) 성별

대 상	특성	교육자료
여성	여성 생활환경을 반영한 실습형	여성 교재, 리플렛

〈 2025 한국의 성인지 통계 〉

1. 2024년 소화기 사용법 인지 정도 설문 결과, 남성의 12.1%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무려 34.8%가 모른다고 답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2. 2024년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 설문 결과, 남성의 26.2%가 모른다고 응답한 데 비해, 여성은 45.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여, 여성의 인지 부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2) 연령별

대 상	특성	교육자료
영유아(0~5세)	안전동화 및 동요 등 놀이요소 활용	안전동화·동요, 스티커북
아동기(6~12세)	체험중심 소화기 사용법 + 안전한 대피	어린이 소방안전 교재
청소년기(13~18세)	화재안전, 응급처치 리더양성 교육	청소년 교재 + 영상
성인기(19~60세)	실습위주의 소소완 + 응급처치교육	국민안전교육 실무
노년기(60세 이상)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대피법과 예방수칙	노인 교재, 멀티미디어북

3) 계층별

대 상	특성	교육자료
노년기(60세 이상)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대피법과 예방수칙	노인 교재, 멀티미디어북
장애인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대피요령	장애인 교재, 멀티미디어북
외국인(다문화 포함)	취업교육장 등과 연계, 사업장 안전 등	외국인 교재 + 영상

- 교육범위 : 화재안전·응급처치·생활안전·재난안전 4개 분야 집중

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재난안전
화재예방, 대피·초기대처 등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상황별 응급처치	일상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자연·사회재난 등 대처 및 응급처치

14)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KASEM: 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 행정안전부가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위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어떠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16.2월 개발, '24.7.26. 개편)
- 생애주기 분류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5개 주기**

- 안 제5조제2항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시 고려 사항으로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 이는 교육 범위를 화재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재난과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조치라 할 것임.
- 실제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사고 출동 통계를 보면 화재(251,334건)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승강기, 인명간힘 등 사회적 재난사고 그리고 벌집제거·동물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까지 연간 20만 건 이상 다양한 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¹⁵⁾
- 아울러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시행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방법,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구분	영유아기 (0~5세)	아동기 (6~11세)	청소년기 (12~18세)	성인기 (19~64세)	노년기 (65세 이상)
특성	안전교육 의존기(안전습관 습득)	안전교육 준비기(안전습관 선택 및 증진)	안전교육 성숙기(안전습관 증진)	안전교육 독립·확대기 (안전역량 확대 및 타 인의 안전책임)	안전교육 유지기(안전환경 확보)

○ 안전교육 범주

- 5개 대분류(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18개 중분류(화재안전, 교통수단 안전, 신변안전, 식품안전 등)
- 40개 소분류(다중이용시설 안전, 제품사용 안전, 대중교통 안전, 감염병 안전 등)

15) 최근 5년간 서울시 재난안전사고 출동 통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마.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안 제6조)

제6조(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는 시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사고(16개) 분야 출동 현황〉

유 형	출동실적(건)					
	2021	2022	2023	2024	2025. 7.	계
① 화재	53,045	50,877	56,290	57,417	33,705	251,334
② 교통	5,843	6,795	8,092	7,453	4,247	32,430
③ 승강기	6,449	7,008	8,388	8,686	5,024	35,555
④ 인명감힘	8,361	5,297	5,774	5,926	3,581	28,939
⑤ 자살추정	4,539	6,261	8,933	7,929	3,886	31,548
⑥ 위치확인	3,262	9,988	21,508	19,123	10,596	64,477
⑦ 산악	1,830	1,987	2,142	2,062	948	8,969
⑧ 수난	6,519	6,514	3,758	2,300	1,709	20,800
⑨ 추락	991	852	846	778	480	3,947
⑩ 끼임	158	851	1,153	1,139	683	3,984
⑪ 붕괴·도괴	220	463	529	543	422	2,177
⑫ 누출사고	117	331	458	352	191	1,449
⑬ 폭발	100	131	182	151	75	639
⑭ 테러(의심)	-	88	627	536	110	1,361
⑮ 항공기	-	6	6	4	7	23
⑯ 기타	22,009	44,563	9,876	11,285	2,957	90,690
계	113,443	142,012	128,562	125,684	68,621	578,322

〈생활안전(10개) 분야 출동 현황〉

유 형	출동실적(건)					
	2021	2022	2023	2024	2025. 7.	계
① 벌(집)제거	8,918	8,934	14,344	17,574	7,605	57,375
② 동물처리	6,109	4,125	7,213	6,092	3,164	26,703
③ 장애물 제거	0	2,011	9,097	9,913	6,577	27,598
④ 단순개방	7,430	4,450	4,881	3,596	1,759	22,116
⑤ 비화재보	33,240	29,378	43,006	36,824	19,532	161,980
⑥ 피해복구	4,742	2,370	2,740	1,776	1,473	13,101
⑦ 생활끼임	1,239	597	1,031	956	717	4,540
⑧ 행사지원	0	44	230	164	212	650
⑨ 감염병 지원	0	40	40	22	10	112
⑩ 기타안전	21,739	19,411	9,286	9,827	2,468	62,731
계	83,417	71,360	91,868	86,744	43,517	376,906

- 안전취약계층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인식과 대처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 하겠음.
- 또한, 필요 시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라 여겨지며,
- 따라서 본 조항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바. 교육 홍보(안 제7조)

제7조(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7조(교육 홍보)는 시장에게 시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소방본부는 교육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등¹⁶⁾을 활용하고 있으나,

16) 서울소방재난본부 교육 홍보 활용 내용

- [표 7]과 같이 서울시 인구 대비 소방안전 교육은 약 1.2%~2.7%, 응급처치 교육은 약 0.5%~1.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교육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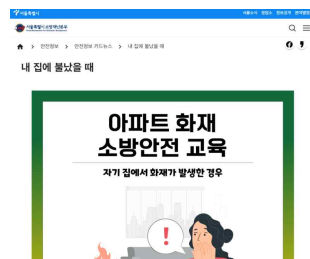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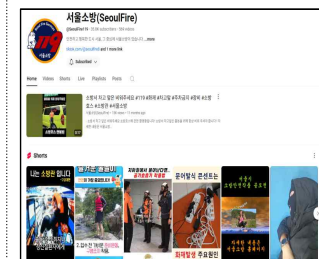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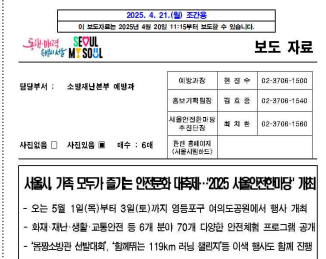
[표 7] 서울시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참여율 현황(출처 : 통계청) (단위 : 명,%)

구분	서울시 인구*	소방안전교육(참여율)	응급처치교육(참여율)
2025.7.	9,325,616	160,423(1.7%)	50,135(0.5%)
2024	9,331,828	215,754(2.3%)	95,768(1%)
2023	9,386,034	255,562(2.7%)	123,352(1.3%)
2022	9,428,372	116,381(1.2%)	51,362(0.5%)

-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 일정 안내를 넘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사. 시행일 및 「시민안전과수꾼조례」 폐지 관련(안 부칙)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소방에서 운영중인 교육체계와의 충돌을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SNS	유튜브	보도자료

방지하고 제도 전환에 따른 행정 혼선과 교육 공백을 방지코자 하려는 것임.

-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시민안전과수꾼조례」를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시민안전과수꾼의 초기대응교육’이 본 제정안의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시민안전기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임.
- 다만, 「2025년 시민표준안전교육과정 구성계획¹⁷⁾」에서는 교육 명칭을 ‘시민표준안전교육’으로 규정한 반면, 본 제정안에서는 ‘시민안전기본교육’으로 명명하고 있어 행정 내부 방침과 조례 간 용어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조례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지침 수립 시 명칭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조례 폐지로 인해 현행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17) 「2025년 시민표준안전교육과정 구성계획」(안전지원과-제2949호, 25.2.13.)

□ 추진개요

- 사업명: 시민 표준안전교육 과정 구성
- 사업예산: 약 금20백만원(금이천만원)
- 주요내용: 단계별 교육 세부 주제 및 이론·실습시간 정립
- ⇒ 기본이 되는 안전교육 내용을 모아 정책화, 사업화 추진

소방서 안전교육		+	시민안전과수꾼 양성교육	
화재	화재 안전교육(1~2시간)		기본	위기·표준·응급(3과목 8시간)
응급	기본 또는 심화(1~4시간)		심화	대상별·장소별 행동요령(4시간)

안전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및 체계화 수립

서울형 시민 표준안전교육 과정 구성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소방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의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맞추는 한편,
- 시민안전기본교육을 도입하여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한 단계별·표준화된 교육을 제도화하여 화재, 재난·재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만, 기존에 운영되던 「시민안전파수꾼조례」를 폐지하면서 본 제정안에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바 조례 폐지로 인한 공백과 전환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